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651
------	------

2020. 11. 23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7월 13일, 서윤기 의원 외 42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4일
- 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】
 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20. 11. 23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서윤기 의원)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자매결연’ 을 ‘상호결연’ 으로 함(안 제5조, 제5조제1항, 제5조제2항, 제6조, 제7조, 제9조 및 제10조).
- 나. ‘자매도시’ 를 ‘상호결연도시’ 로 함(안 제5조, 제8조, 제13조 및 제22조).
- 다. ‘자매우호도시’ 를 ‘상호우호도시’ 로 함(안 제13조 및 22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‘자매결연’, ‘자매도시’ 등 성차별적이고 우열적 관계를 나타내는 차별적 용어를, ‘상호결연’, ‘상호결연도시’ 등 상호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객관적인 용어로 변경하고자 발의됨.

나.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

- 2019년 서울시 인권위원회(이하 “인권위원회”)는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860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.
- 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분야는 ‘차별 및 인권침해’, ‘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’, ‘시민참여보장’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각 평가 분야별로 평가항목을 9개로 세분화하여 평가하였음.

- 그 결과 62개 자치법규(조례57, 규칙5), 96개 조항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서울시는 올해 4월 이에 대한 개정 권고안을 발표하였음.
- 82개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53건의 조례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(2020. 7. 13.), 이 중 34건이 의결되었음.

<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및 목록 >

연번	인권영향평가				권고사유	
	평가항목	현재용어	대안용어	조문		
총 계				96		
1	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(9개 용어)	행상/노점상	→	거리가게	5	‘거리가게’는 ‘행상/노점상’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 순화어임(2013)
		미혼	→	비혼	1	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‘하지 않은 것’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필요
		부모	→	보호자	1	부모 외의 대상(조부모 등)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
		소외계층 우범지역	→	취약계층 취약지역	14	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
		저출산	→	저출생	11	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
		유모차	→	유아차	4	유모차는 ‘어미 母’지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: ‘유아’ 중심으로 표현
		자매결연	→	상호결연 (sister city)	12	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※ 한국법제연구원(2015)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
		장애등급	→	장애정도	1	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<장애인복지법>
		결손가장 결손가족	→	소년녀 한부모	1	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,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서울시 행정순화어임(2019)
2	편견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	학생	→	청소년/시민	3	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
		주부	→	여성	1	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‘주부’로 특정할 우려가 있고, 실제 여성인턴십 사업으로 운영중
		특정계층 지칭			1	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써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※ 주부, 학생 등 → 고용계약이 없는 자

3	입장 및 이용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	8	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마련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
4	장애인의 문화권 제약	4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.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(이용)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
5	반환권 제약	8	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, 관람권(이용권)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보장
6	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	20	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
7	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	1	‘장애’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, 「정신상의 장애」 문구 삭제 필요

※ 개인정보보호권 보장, 주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의 두 가지 항목은 기본 조례가 있어 권고에서 제외됨.

다. 자매결연·자매도시 용어사용 현황

-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성차별적이고 우열적인 표현인 ‘자매도시’, ‘자매결연’을 새로운 객관적, 중립적 용어로 순화하고자 ‘상호결연도시’, ‘상호결연’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임.
- 지방정부의 ‘자매결연’은 해외도시와 공동관심사에 긴밀히 소통하고 행정·경제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협력 약속을 의미¹⁾하며, 이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국제화 수단이자 보편화된 국제교류 활동이라 할 수 있음.
 - 서울시는 1968년부터 아테네(그리스), 워싱턴 D.C(미국), 하노이(베트남), 파리(프랑스) 등 23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.

1) 전국시도지사협의회(2015. 2.), 「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」, 81면

- ‘자매도시’ 용어관련 인권위원회 권고안의 근거가 된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²⁾에서는 도농교류를 자매결연으로 표현하는 것을 도시와 농촌을 상호 우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적 용어로 보고 법령개선을 권고했음.

<한국법제연구원 ‘자매도시’ 차별적 법령용어 의견>

선정기준	전통적인 서열적 용어를 새로운 중립적인 용어로 순화가 필요함
(대상용어)	고아, 편부, 편모, 부모, 자녀, 자매결연
자매결연 에 대한 법령개선 권고내용	
(대상용어)	도농 자매결연 → (순화용어)도농 교류사업
(사 용 례)	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 등
(선정이유)	도농교류에 관한 행위를 '자매결연'으로 표현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을 상호 우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성을 표현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의 필요성이 있음

- 해외도시와의 협력관계를 “자매”와 같이 통상적 혈연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변하고 높은 수준의 성인지각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, 특정성별을 법령용어로 사용하는 것 또한 객관적 법령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만큼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.
- 다만 자매의 사전적 의미에 “같은 계통에 속해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서로 친선관계에 있음을 이르는 말”을 내포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나 우월적 관계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.
- 또한,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활동을 직접적이고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서 ‘자매결연’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조례 변경 시

2) 한국법제연구원(2015.10.), 「차별적·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」

관계법령과의 용어사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.

<지방자치단체 국제활동에 대한 근거법령>

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
제37조(교류협력의 범위)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" <u>교류협력</u> "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<u>자매결연 체결</u> 이나 국제행사의 유치·개최 등을 말한다.

-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‘자매도시’ 등의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 변경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, 영문(sister city)을 동시표기 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음.
 - 미국, 호주, 태국, 터키, 일본 등 국제적으로 지자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자매도시(sister city)로 표현해 사용하고 있음.
- 다만 개정안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‘상호(相互)’는 ‘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’의 한정적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관계의 친밀성을 표현하는 다른 대체용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.
- 한편, 개정안에 명시된 변경조문 외 조례 제2장의 제목 ‘자매결연 체결’이 용어변경 사항에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‘상호’ 를 교류 협력 해외도시와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‘친선’ 으로 수정함.

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‘상호결연’ 을 ‘친선결연’ 으로 수정함(안 제2장, 안 제5조 ~ 안 제7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 등).
- ‘상호결연도시’ 를 ‘친선도시’ 로 수정함(안 제5조제2항, 안 제8조, 안 제13조제3호 등).
- ‘상호우호도시’ 를 ‘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’ 로 수정함(안 제13조, 안 제22조제1항제3호 등).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51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1월 23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‘상호’ 를 교류 협력 해외도시와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‘친선’ 으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‘상호결연’ 을 ‘친선결연’ 으로 수정함(안 제2장, 안 제5조 ~ 안 제7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 등).
- 나. ‘상호결연도시’ 를 ‘친선도시’ 로 수정함(안 제5조제2항, 안 제8조, 안 제13조제3호 등).
- 다. ‘상호우호도시’ 를 ‘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’ 로 수정함(안 제13조, 안 제22조제1항제3호 등).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장의 제목 중 “자매결연” 을 “친선결연” 으로 한다.

안 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“상호결연” 을 각각 “친선결연” 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상호결연도시” 를 “친선도시” 로 한다.

안 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 중 “상호결연” 을 각각 “친선결연” 으로 한다.

안 제7조의 제목 및 본문 중 “상호결연” 을 각각 “친선결연” 으로 한다.

안 제8조 중 “상호결연도시” 를 “친선도시” 로 하고,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중 “상호결연” 을 각각 “친선결연” 으로 한다.

안 제13조 중 “상호우호도시 등” 을 “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 등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상호결연도시” 를 “친선도시” 로 한다.

안 제22조제1항제3호 중 “상호우호도시” 를 “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장 <u>자매결연</u> 체결</p> <p>제5조(<u>자매결연</u> 등)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<u>자매결연</u>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자매도시</u>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.</p> <p>제6조(<u>자매결연</u> 등의 제의)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<u>자매결연</u>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, 도시여건,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외국도시에 <u>자매결연</u>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</p>	<p>제2장 <u>자매결연</u> 체결</p> <p>제5조(<u>상호결연</u> 등) ① ----- ----- -----<u>상호결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상호결연도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<u>상호결연</u> 등의 제의) ① ----- --<u>상호결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상호결연</u> ----- -----</p>	<p>제2장 <u>친선결연</u> 체결</p> <p>제5조(<u>친선결연</u>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<u>친선결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친선도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<u>친선결연</u> 등의 제의) ① ----- --<u>친선결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친선결연</u> ----- -----</p>

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제7조(자매결연의 의결)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·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리)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

-----.

③ 상호결연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상호결연의 의결) --
-----상호결연-----

-----.

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 -----상호결연도시-----

-----.

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리) -----상호결연-----

-----.

③ 친선결연-----

-----.

1. ~ 6. (개정안과 같음)

제7조(친선결연의 의결) --
-----친선결연-----

-----.

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 -----친선도시-----

-----.

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리) -----친선결연-----

를 계속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-----.

-----.

제10조(결연의 취소)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0조(결연의 취소) -----

-----상호결연-----

-----.

제10조(결연의 취소) -----

-----친선결연-----

-----.
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시장은 자매우호도시 등과의 우호증진 및 서울거주 외국인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“도시의 날“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-----
-----상호우호도시 등-----

-----.
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-----
-----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 등-----

-----.

- 1. ~ 2. (생략)
- 3. 그 밖에 자매도시 등과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
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상호결연도시-----

- 1. ~ 2. (개정안과 같음)
- 3. -----친선도시-----

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① (생략)

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①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

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자매우호도시</u>,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상호우호도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1. ~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<u>친선도시</u>, <u>우호협력도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--	--	--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 제목 중 “자매결연”을 “친선결연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매결연”을 각각 “친선결연”으로 하고,
제2항 중 “자매도시”를 “친선도시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 중 “자매결연”을 각각
“친선결연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및 본문 중 “자매결연”을 각각 “친선결연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자매도시”를 “친선도시”로 하고, 제9조와 제10조 중 “자매
결연”을 각각 “친선결연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자매우호도시 등”을 “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 등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3호 중 “자매도시”를 “친선도시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3호 중 “자매우호도시”를 “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장 <u>자매결연</u> 체결	제2장 <u>친선결연</u> 체결
제5조(<u>자매결연</u> 등) ①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<u>자매결연</u> 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.	제5조(<u>친선결연</u> 등) ① ----- ----- <u>친선결연</u> ----- -----.
② <u>자매도시</u>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.	② <u>친선도시</u> ----- ----- -----.
제6조(<u>자매결연</u> 등의 제의)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<u>자매결연</u>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, 도시여건,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	제6조(<u>친선결연</u> 등의 제의) ① ----- ----- <u>친선결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외국도시에 <u>자매결연</u>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	② ----- <u>친선결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자매결연</u>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.	③ <u>친선결연</u>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7조(<u>자매결연</u> 의 의결) 시장은 외국도	제7조(<u>친선결연</u> 의 의결) -----

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 시장은 자매 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·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리)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결연의 취소)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시장은 자매우호 도시 등과의 우호증진 및 서울거주 외국인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“도시의 날“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3. 그 밖에 자매도시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

-----친선결연-----

-----.

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 -----친선 도시-----

-----.

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리) -----친선결연-----

-----.

제10조(결연의 취소) -----

-----친선결연-----

-----.
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-----친선도시-----
시, 우호협력도시 등-----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친선도시-----

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①
(생략)

1. ~ 2. (생략)

3. 자매우호도시,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

4. (생략)

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①
(현행과 같음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-----

4. (현행과 같음)